Daekwang Logebien

삼숭지구 대광로제비앙 (가칭 옥정역) 1단지(41BL) 입주자모집공고

■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청약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경기도가 제정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적용받는 경기도민 우선 공급 아파트입니다.

■ 청약 및 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은 「주택법」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, 법령 개정 및 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해당 법령 및 제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여 「주택법」 제63조 및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, 「주택법」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여 「주택법」 제39조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른 전매제한 등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(매매, 증여,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, 「주택법」 제6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)가 제한되고,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주택으로 「주택법」 제65조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8조에 따른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주택입니다.

■ 「주택법」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세대에 속한 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세대에 속한 자로 간주되어 「주택법」 제65조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8조에 따른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「주택법」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세대에 속한 자는 「주택법」 제6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2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2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2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2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2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2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2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2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2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3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3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3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3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3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3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3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3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3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3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4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4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4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4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4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4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4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4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4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4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5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5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5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5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5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5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5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5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5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5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6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6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6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6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6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6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6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6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6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6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7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7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7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7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7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7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7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7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7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7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8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8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8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8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8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8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8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8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8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8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9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9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9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9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9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9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9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9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9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9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0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0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0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0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0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0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0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0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0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0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1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1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1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1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1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1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1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1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1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1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2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2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2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2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2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2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2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2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2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2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3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3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3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3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3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3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3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3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3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3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4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4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4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4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4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4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4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4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4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4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5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5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5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5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5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5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5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5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5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5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6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6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6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6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6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6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6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6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6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6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7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7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7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7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7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7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7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7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7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7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8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8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8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8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8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8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8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8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8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8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90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9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92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9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94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95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9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97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98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99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